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18년 12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0.3% 증가(전월대비 0.6% 감소)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 0.3% 증가함.
 - 전월대비로는 건설업에서 증가하였으나 광공업,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줄어 0.6% 감소
- 제조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40.3%), 전자부품(-8.7%)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자동차(18.9%), 반도체(15.5%)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함(전월대비 1.8%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8.5%), 부동산(-2.7%) 등이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8.9%), 전문·과학·기술(3.9%)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함(전월대비 0.3% 감소).

◆ 2018년 12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4.5%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6.1%), 승용차 등 내구재(3.7%), 화장품 등 비내구재(1.4%) 판매가 모두 늘어 3.0% 증가함(전월대비 0.8% 증가).
- 설비투자는 항공기 등 운송장비(6.0%)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21.1%) 투자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14.5% 감소함(전월대비 0.4%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년동월대비 9.5%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7.0% 감소하였음.

◆ 2018년 1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 선행종합지수도 전월대비 0.1%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 2019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8%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 동월대비 0.4% 상승)

- 2019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24(2015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0.8% 상승함(전월 대비 0.1% 하락).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음식·숙박(3.0%), 식료품·비주류음료(2.6%) 등 9개 부문에서 상승, 보건(-0.5%), 통신(-1.5%), 교통(-3.8%)은 하락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 이외(-0.8%)는 하락하였으나 식품(2.6%)은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0.4% 상승함(전월대비 0.3% 하락).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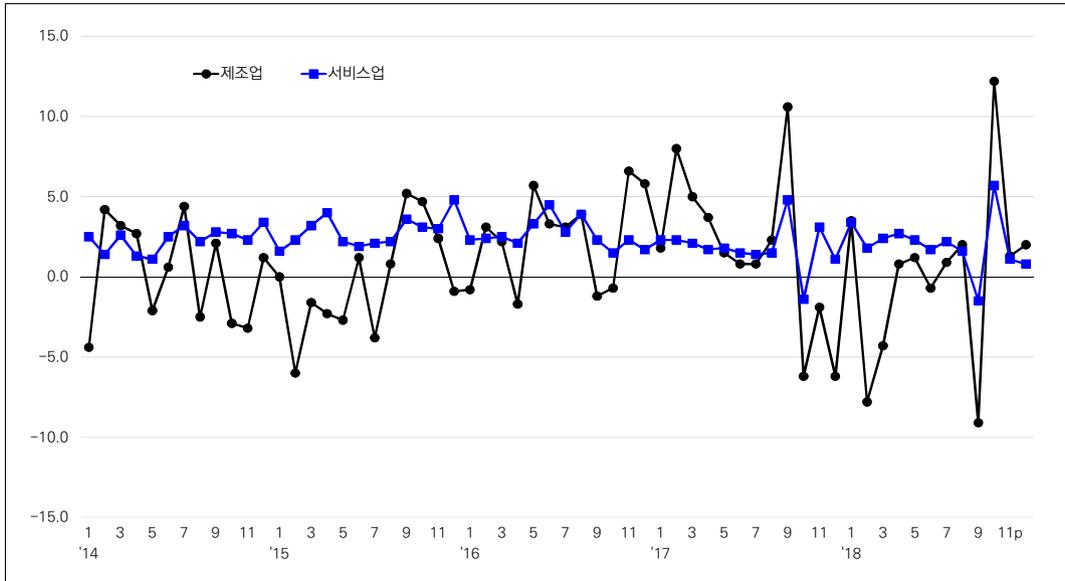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안은 전월대비)

		연간			분기								월		
		2016	2017	2018p	2017				2018				2017	2018	
					1/4	2/4	3/4	4/4	1/4	2/4	3/4	4/4p	12월	11월p	12월p
생산	전산업	3.0	2.3	1.0	3.9	2.5	3.9	-0.7	0.7	1.2	-0.8	2.6	-0.8	0.6(-0.7)	0.3(-0.6)
	광공업	2.3	1.9	0.3	4.7	2.2	4.6	-3.8	-2.2	0.7	-1.8	4.7	-4.8	1.1(-1.6)	1.6(-1.4)
	제조업	2.4	1.6	0.1	4.8	1.9	4.6	-4.8	-2.8	0.5	-2.3	5.0	-6.2	1.3(-1.6)	2.0(-1.8)
	건설업	15.4	10.1	-0.4	17.7	13.6	12.7	-0.5	1.5	-3.4	-9.8	-7.8	-0.4	-10.4(-1.2)	-9.5(2.4)
	서비스업	2.6	1.9	2.0	2.2	1.7	2.5	-0.9	2.6	2.3	0.8	2.4	1.1	1.1(-0.3)	0.8(-0.3)
소비	소비재 판매	3.9	1.9	4.2	1.6	1.0	3.2	2.1	5.0	4.7	3.9	2.9	1.4	1.0(0.5)	3.0(0.8)
투자	설비투자	-1.3	14.1	-4.2	18.2	17.8	20.6	2.0	9.4	-5.9	-13.6	-5.9	2.5	-9.3(-4.9)	-14.5(-0.4)
물가		1.0	1.9	1.5	2.1	1.9	2.3	1.5	1.3	1.5	1.8	1.8	0.8	1.3(-0.3)	0.8(-0.1)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3) 2015년, 2016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포함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18년 1월, 12월, 2019년 1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 안은 전월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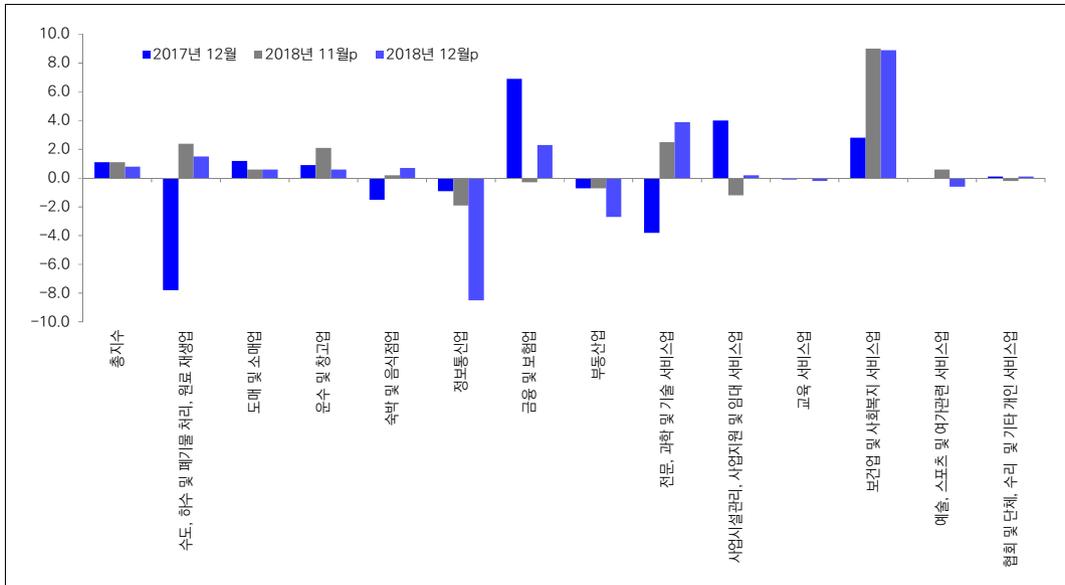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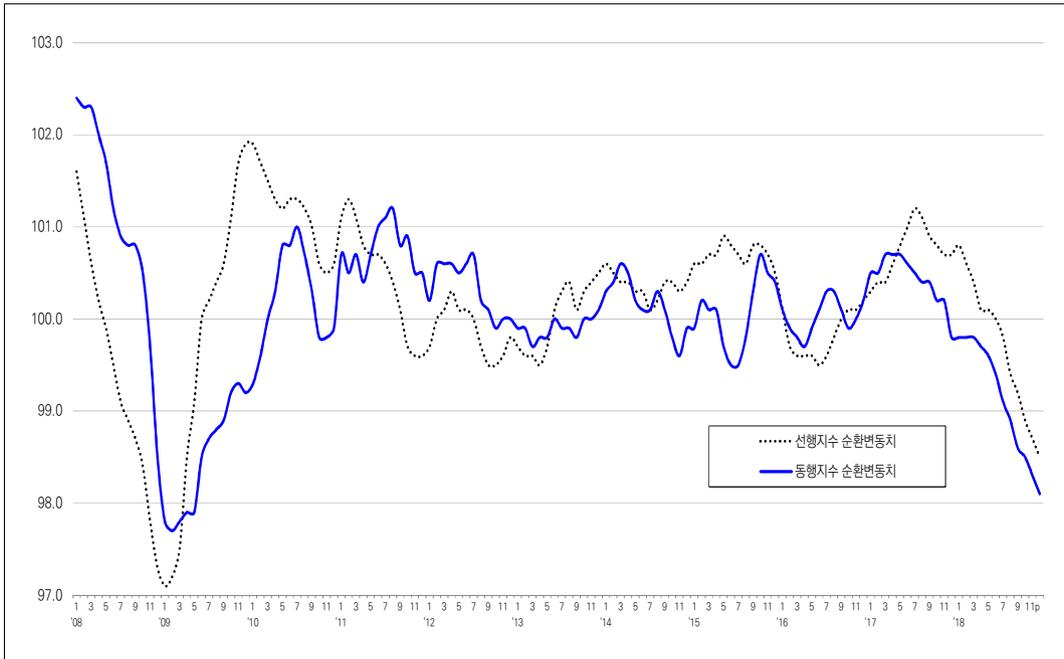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 = 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종욱,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 동향

◆ 1월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19천 명 증가

- 2019년 1월 경제활동인구는 27,45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3천 명(0.8%) 증가함.
 - 취업자는 26,23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천 명 증가하였는데, 성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는 98천 명 증가하였으나, 남성 취업자 수는 79천 명 감소하였음.
 -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04천 명 증가한 1,224천 명으로 실업률은 4.5%(0.8%p 증가)로 나타남. 그중 남성 실업자(693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112천 명 증가하여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7%p 증가한 4.4%로 나타났으며, 여성 실업자(530천 명)는 92천 명 증가하여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7%p 증가한 4.5%를 기록했음.
- 2019년 1월 경제활동참가율은 61.9%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1.7%)은 0.6%p 증가했고 남성(72.6%)은 0.2%p 감소하였음.
- 2019년 1월 고용률은 59.2%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하였음.
 -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7%p 감소한 69.4%를 기록했고 여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한 49.4%를 기록했음.
 - 15~64세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한 65.9%를 기록하여 15세 이상 고용률에 비해 6.7%p 높게 나타남(그림 1 오른쪽 참조).
 - 15~64세 남성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8%p 감소한 75.0%를 기록하였고 여성은 0.4%p 증가한 56.8%를 기록했음.
- 2019년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 명 증가함.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육아’와 ‘가사’는 전년동월대비 105천 명, ‘재학’과 ‘수강’은 169천 명 감소한 반면, ‘쉬었음’은 133천 명 증가하고, ‘취업준비’도 100천 명 증가하였음(그림 2 오른쪽 참조).

〈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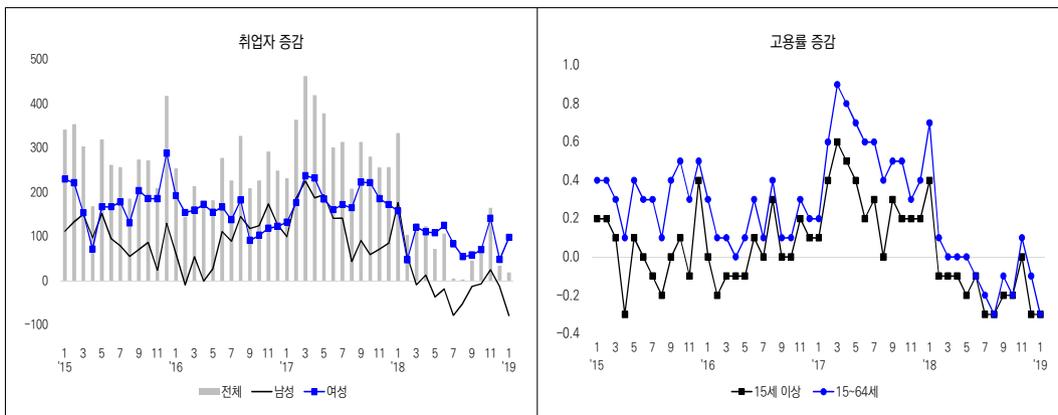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7	2018	2018		2019
					1월	1월	11월	12월	1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3,606	43,931	44,182	43,790	44,073	44,284	44,316	44,319
	(증가수)	(366)	(325)	(252)	(351)	(282)	(244)	(256)	(246)
	경제활동인구	27,418	27,748	27,895	26,886	27,232	28,092	27,582	27,455
	(증가수)	(265)	(329)	(148)	(255)	(346)	(203)	(66)	(223)
	취업자	26,409	26,725	26,822	25,878	26,213	27,184	26,638	26,232
	(증가율)	(0.9)	(1.2)	(0.4)	(0.9)	(1.3)	(0.6)	(0.1)	(0.1)
	(증가수)	(231)	(316)	(97)	(232)	(334)	(165)	(34)	(19)
	(남성)	(85)	(127)	(4)	(100)	(177)	(25)	(-14)	(-79)
	(여성)	(146)	(189)	(94)	(132)	(158)	(141)	(48)	(98)
	경제활동참가율	62.9	63.2	63.1	61.4	61.8	63.4	62.2	61.9
	(남성)	(74.0)	(74.1)	(73.7)	(72.5)	(72.8)	(73.8)	(73.0)	(72.6)
	(여성)	(52.2)	(52.7)	(52.9)	(50.7)	(51.1)	(53.4)	(51.8)	(51.7)
	고용률	60.6	60.8	60.7	59.1	59.5	61.4	60.1	59.2
	(남성)	(71.2)	(71.2)	(70.8)	(69.8)	(70.1)	(71.3)	(70.3)	(69.4)
(여성)	(50.3)	(50.8)	(50.9)	(48.8)	(49.2)	(51.8)	(50.2)	(49.4)	
실업자	1,009	1,023	1,073	1,008	1,020	909	944	1,224	
실업률	3.7	3.7	3.8	3.7	3.7	3.2	3.4	4.5	
(남성)	(3.8)	(3.8)	(3.9)	(3.7)	(3.7)	(3.4)	(3.7)	(4.4)	
(여성)	(3.6)	(3.5)	(3.7)	(3.8)	(3.8)	(3.0)	(3.1)	(4.5)	
비경제활동인구	16,187	16,183	16,287	16,904	16,840	16,192	16,733	16,864	
(증가수)	(102)	(-5)	(104)	(96)	(-64)	(41)	(190)	(23)	
15~64세	생산가능인구	36,839	36,860	36,796	36,865	36,830	36,782	36,788	36,766
	(증가수)	(134)	(21)	(-63)	(81.0)	(-35.0)	(-68.0)	(-55.0)	(-63.0)
	참가율	68.7	69.2	69.3	68.0	68.6	69.4	68.9	68.7
	(남성)	(78.9)	(79.3)	(79.1)	(78.1)	(78.6)	(79.0)	(78.6)	(78.3)
	(여성)	(58.3)	(59.0)	(59.4)	(57.7)	(58.5)	(59.7)	(59.1)	(58.9)
	고용률	66.1	66.6	66.6	65.5	66.2	67.1	66.5	65.9
	(남성)	(75.9)	(76.3)	(75.9)	(75.2)	(75.8)	(76.2)	(75.7)	(75.0)
(여성)	(56.1)	(56.9)	(57.2)	(55.7)	(56.4)	(57.8)	(57.1)	(56.8)	
취업자	24,342	24,559	24,511	24,147	24,371	24,671	24,455	24,246	
(증가수)	(149)	(218)	(-48)	(144)	(224)	(-29)	(-73)	(-125)	

주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9. 2), 『2019년 1월 고용동향』.

[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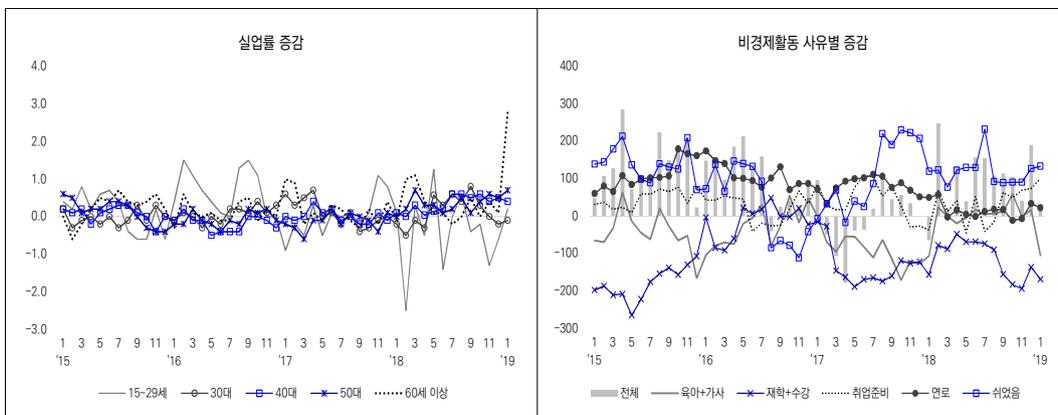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주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시학원, 진학준비를 포함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 60세 이상 취업자 꾸준히 증가, 40대 취업자는 감소세 지속

- 2019년 1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를 연령별로 보면 20대(34천 명, 0.9%) 연령층에서 증가폭이 감소('18년 12월 71천 명 증가, 11월 111천 명 증가)하고 있고, 30대(-126천 명, -2.2%), 40대(-166천 명, -2.5%) 연령층은 취업자가 감소하였음. 반면 50대(44천 명, 0.7%), 60세 이상(264천 명, 7.1%) 연령층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함.

－ 20대 초반 연령층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71천 명 감소로 전월('18년 12월 72천 명 감

소)과 비슷한 수준이나, 20대 후반 취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되어 105천 명 증가함('18년 12월 142천 명 증가).

- 30대 연령층은 30대 초반(79천 명 감소)이 30대 후반(47천 명 감소)보다 감소의 규모가 크며,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서 모두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소폭 확대(30대 초반 '18년 12월 64천 명 감소, 30대 후반 '18년 12월 39천 명 감소).
- 40대는 취업자 감소폭이 점점 확대('19년 1월 166천 명 감소, '18년 12월 135천 명 감소, 11월 129천 명 감소)되고 있는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은 취업자 증가폭이 전월('18년 12월 203천 명 증가)에 비해 확대되어 1월 전년동월대비 264천 명 증가를 기록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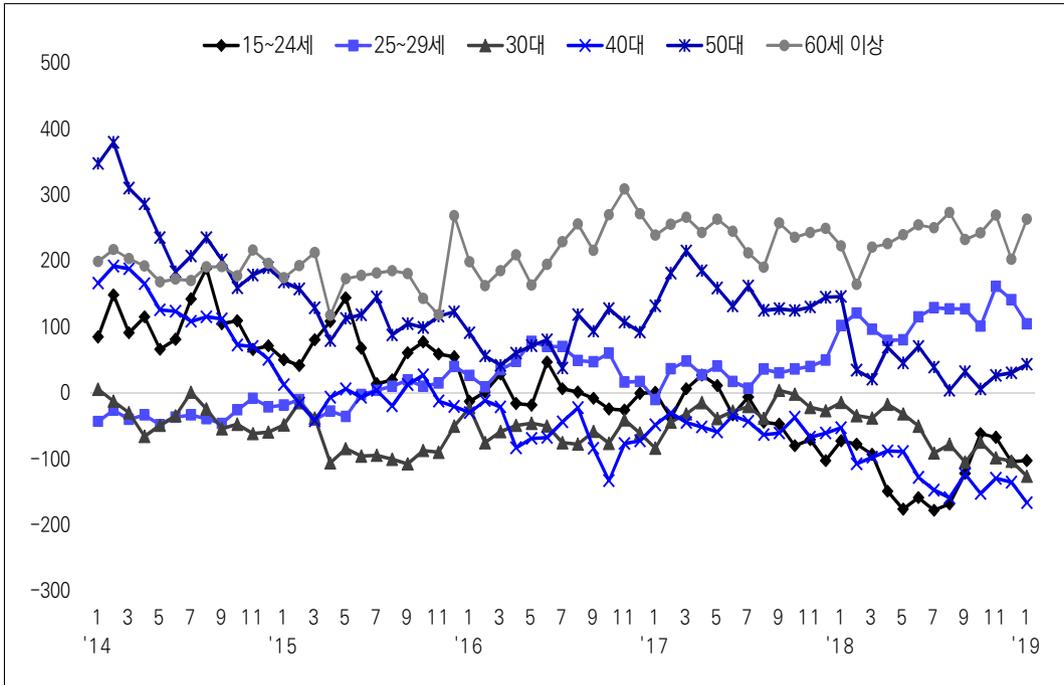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2016	2017	2018	2017	2018	2018		2019
				1월	1월	11월	12월	1월
전 체	26,409 (231)	26,725 (316)	26,822 (97)	25,878 (232)	26,213 (334)	27,184 (165)	26,638 (34)	26,232 (19)
15~19세	244 (-1)	247 (3)	205 (-42)	268 (4)	233 (-35)	183 (-16)	184 (-33)	202 (-31)
20~29세	3,664 (44)	3,660 (-3)	3,699 (39)	3,589 (-12)	3,655 (66)	3,749 (111)	3,700 (71)	3,689 (34)
20~24세	1,402 (0)	1,368 (-34)	1,292 (-77)	1,367 (-3)	1,330 (-37)	1,283 (-51)	1,251 (-72)	1,259 (-71)
25~29세	2,262 (44)	2,292 (30)	2,408 (116)	2,222 (-10)	2,324 (103)	2,466 (162)	2,449 (142)	2,430 (105)
30~39세	5,672 (-57)	5,643 (-29)	5,582 (-61)	5,640 (-83)	5,626 (-14)	5,558 (-98)	5,548 (-103)	5,501 (-126)
30~34세	2,732 (-156)	2,593 (-139)	2,512 (-81)	2,647 (-185)	2,543 (-104)	2,494 (-71)	2,492 (-64)	2,464 (-79)
35~39세	2,940 (98)	3,050 (110)	3,070 (20)	2,993 (102)	3,083 (90)	3,064 (-27)	3,057 (-39)	3,037 (-47)
40~49세	6,832 (-59)	6,783 (-50)	6,666 (-117)	6,757 (-48)	6,705 (-52)	6,664 (-129)	6,611 (-135)	6,539 (-166)
50~59세	6,150 (82)	6,302 (152)	6,346 (44)	6,120 (133)	6,267 (147)	6,432 (27)	6,369 (31)	6,311 (44)
60세 이상	3,848 (223)	4,090 (242)	4,324 (234)	3,503 (239)	3,727 (223)	4,598 (270)	4,226 (203)	3,990 (264)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2019. 2), 『2019년 1월 고용동향』.

[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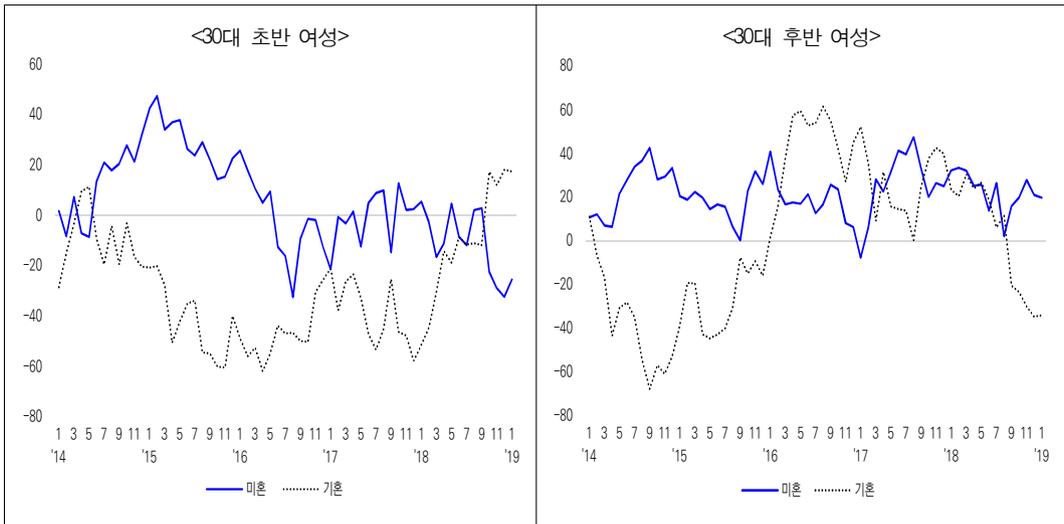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4] 30대 여성 혼인여부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직은 증가폭 축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폭 축소

- 2019년 1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9,80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2천 명(0.5%)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6,42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천 명(-1.1%) 감소함.
- 2019년 1월 임시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12천 명 감소로 전월(2018년 12월 256천 명 감소)보다 감소폭이 개선되었으나, 상용근로자가 279천 명 증가하고 일용근로자는 25천 명 증가하여 모두 증가폭이 축소(상용근로자 2018년 12월 333천 명 증가, 일용근로자 2018년 12월 51천 명 증가)

〈표 3〉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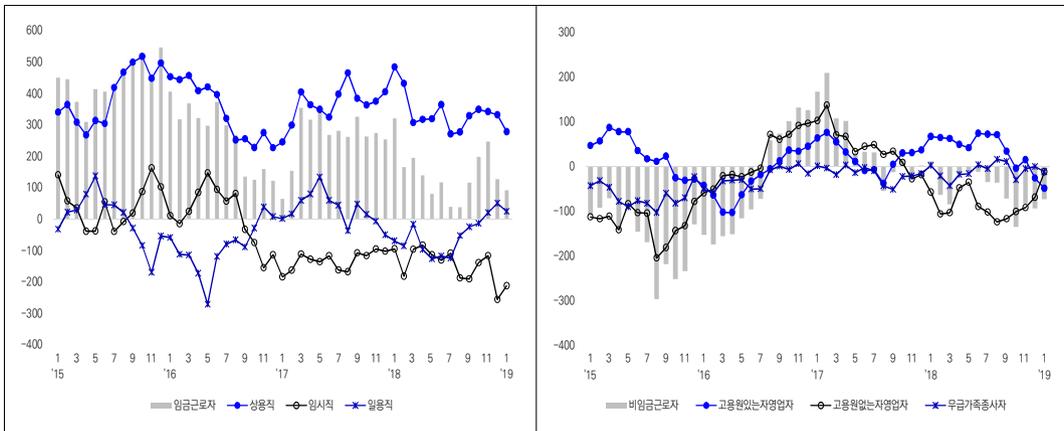
	2016	2017	2018	2017	2018	2018		2019
				1월	1월	11월	12월	1월
전 체	26,409 (231)	26,725 (316)	26,822 (97)	25,878 (232)	26,213 (334)	27,184 (165)	26,638 (34)	26,232 (19)
비임금근로자	6,740 (-36)	6,791 (51)	6,739 (-52)	6,486 (167)	6,498 (12)	6,765 (-83)	6,493 (-94)	6,425 (-7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84 (-25)	1,608 (24)	1,651 (43)	1,595 (63)	1,663 (67)	1,659 (15)	1,616 (-26)	1,614 (-49)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30 (17)	4,074 (44)	3,987 (-87)	3,928 (103)	3,871 (-58)	3,972 (-92)	3,879 (-69)	3,858 (-12)
무급가족종사자	1,126 (-27)	1,110 (-17)	1,101 (-9)	963 (1)	965 (2)	1,134 (-5)	997 (0)	953 (-12)
임금근로자	19,669 (267)	19,934 (265)	20,084 (150)	19,392 (65)	19,715 (322)	20,419 (248)	20,146 (128)	19,807 (92)
상용근로자	13,062 (346)	13,428 (366)	13,772 (345)	13,158 (246)	13,643 (485)	13,897 (343)	13,934 (333)	13,923 (279)
임시근로자	5,124 (10)	4,992 (-132)	4,851 (-141)	4,762 (-184)	4,667 (-94)	4,955 (-116)	4,672 (-256)	4,455 (-212)
일용근로자	1,483 (-88)	1,514 (31)	1,460 (-54)	1,473 (2)	1,404 (-69)	1,568 (21)	1,540 (51)	1,429 (25)
1~17시간	1,267 (50)	1,362 (95)	1,520 (158)	1,313 (73)	1,382 (70)	1,512 (129)	1,545 (39)	1,517 (135)
18~35시간	3,220 (432)	3,051 (-169)	3,690 (639)	2,640 (11)	2,754 (114)	3,101 (320)	3,163 (333)	3,039 (285)
36시간 이상	21,509 (-257)	21,930 (421)	21,209 (-720)	21,304 (212)	21,439 (135)	22,271 (-298)	21,616 (-334)	21,101 (-338)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0	42.8	41.5	42.7	42.0	41.7	41.5	41.1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료 : 통계청(2019. 2), 『2019년 1월 고용동향』.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9천 명 감소(2018년 12월 26천 명 감소)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2천 명 감소(2018년 12월 0천 명 감소)하여 전월과 비교해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전월보다 감소폭이 크게 개선된 12천 명 감소(2018년 12월 69천 명 감소)를 기록
- 취업시간이 1~17시간인 취업자는 1월 전년동월대비 135천 명 증가로 전월(2018년 12월 39천 명 증가)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모습이나, 취업 시간이 18~35시간인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85천 명 증가한 수준으로 전월(2018년 12월 333천 명 증가)보다 증가폭이 축소

[그림 5]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제조업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170천 명 감소

- 제조업 취업자는 최근 취업자 감소폭이 계속 확대되어 2019년 1월 전년동월대비 170천 명 감소(-3.7%)를 기록('18년 12월 127천 명 감소, 11월 91천 명 감소, 10월 45천 명 감소). 한편 농림어업 취업자는 1월 전년동월대비 107천 명 증가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되어 각각 전년동월대비 179천 명(9.8%), 39천 명(3.6%) 증가함.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취업자는 감소폭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1월 전년동월대비 76천 명 감소하였고('18년 12월 89천 명 감소, 11월 91천 명 감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취업자는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된 23천 명 감소를 기록('18년 12월 6천 명 감소)

〈표 4〉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2016	2017	2018	2017	2018	2018		2019
				1월	1월	11월	12월	1월
전 산업	26,409 (231)	26,725 (316)	26,822 (97)	25,878 (232)	26,213 (334)	27,184 (165)	26,638 (34)	26,232 (19)
농림어업	1,273 (-65)	1,279 (6)	1,340 (62)	892 (-9)	986 (94)	1,438 (84)	1,169 (94)	1,093 (107)
광업	19 (5)	23 (4)	19 (-4)	21 (5)	21 (1)	16 (-7)	16 (-7)	16 (-5)
제조업	4,584 (-21)	4,566 (-18)	4,510 (-56)	4,503 (-170)	4,609 (106)	4,490 (-91)	4,491 (-127)	4,439 (-170)
전기·가스·증기	76 (-3)	72 (-4)	70 (-2)	79 (2)	72 (-7)	64 (-8)	64 (-7)	64 (-7)
수도·원료재생	113 (8)	115 (2)	127 (12)	110 (3)	115 (5)	132 (19)	129 (13)	134 (19)
건설업	1,869 (15)	1,988 (119)	2,034 (47)	1,889 (89)	1,988 (99)	2,118 (73)	2,074 (35)	1,969 (-19)
도매 및 소매업	3,754 (-63)	3,795 (41)	3,723 (-72)	3,803 (28)	3,771 (-32)	3,720 (-69)	3,711 (-63)	3,703 (-67)
운수 및 창고업	1,426 (-2)	1,405 (-22)	1,407 (2)	1,416 (-37)	1,426 (11)	1,421 (0)	1,423 (14)	1,417 (-9)
숙박 및 음식점업	2,291 (96)	2,288 (-3)	2,243 (-45)	2,317 (72)	2,286 (-31)	2,224 (-59)	2,240 (-39)	2,246 (-40)
정보통신업	784 (10)	783 (-1)	837 (55)	780 (-1)	789 (9)	867 (87)	880 (94)	883 (94)
금융 및 보험업	803 (4)	794 (-9)	840 (46)	799 (-7)	813 (14)	841 (33)	830 (14)	812 (-1)
부동산업	483 (21)	540 (57)	528 (-12)	508 (24)	512 (4)	549 (11)	535 (-2)	520 (8)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101 (47)	1,092 (-9)	1,096 (4)	1,106 (24)	1,097 (-9)	1,109 (17)	1,097 (6)	1,135 (39)
사업시설·사업지원·임대	1,391 (60)	1,374 (-17)	1,311 (-63)	1,352 (23)	1,340 (-12)	1,290 (-91)	1,279 (-89)	1,264 (-7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1,004 (55)	1,058 (55)	1,110 (52)	930 (51)	991 (62)	1,155 (32)	1,062 (-8)	972 (-19)
교육서비스업	1,862 (27)	1,907 (45)	1,847 (-60)	1,892 (65)	1,826 (-67)	1,858 (-44)	1,853 (-30)	1,837 (1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1,861 (80)	1,921 (61)	2,046 (125)	1,786 (60)	1,826 (40)	2,155 (164)	2,058 (154)	2,004 (179)
예술·스포츠·여가	407 (-21)	428 (22)	445 (16)	414 (23)	461 (47)	451 (11)	444 (-6)	438 (-23)
협회·단체·수리·기타	1,224 (-8)	1,222 (-3)	1,236 (14)	1,203 (0)	1,223 (20)	1,241 (30)	1,233 (13)	1,234 (10)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70 (-13)	64 (-5)	48 (-17)	67 (-10)	54 (-13)	41 (-23)	44 (-19)	43 (-11)
국제 및 외국기관	16 (-2)	12 (-5)	7 (-5)	13 (-5)	8 (-4)	7 (-3)	7 (-3)	8 (-1)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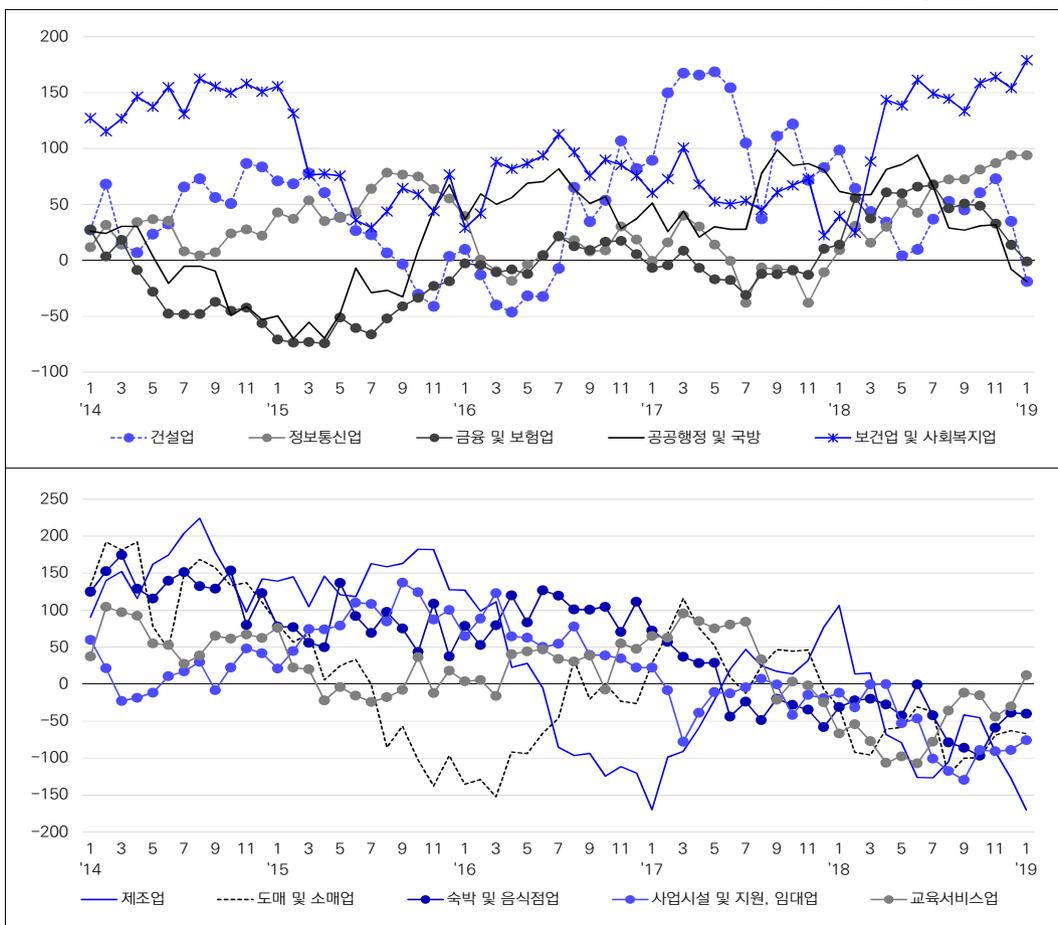
2) 10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 통계청(2019. 2), 『2019년 1월 고용동향』.

- 건설업(19천 명 감소, '18년 12월 35천 명 증가), 운수 및 창고업(9천 명 감소, '18년 12월 14천 명 증가), 금융 및 보험업(1천 명 감소, '18년 12월 14천 명 증가)은 모두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한 상황이고, 교육서비스업(12천 명 증가, '18년 12월 30천 명 감소) 취업자는 증가로 전환
- 도매 및 소매업(67천 명 감소, '18년 12월 63천 명 감소)과 숙박 및 음식점업(40천 명 감소, '18년 12월 39천 명 감소)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는 중임.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이기쁨, 동향분석실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8년 11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 2018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03천 원(3.2% ↑)임.
 - 2018년 1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0% 상승한 3,293천 원이었으며,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한 1,460천 원임.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8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함.

◆ 2018년 1~11월 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5.3%, 3.7% 상승

- 2018년 1~11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36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5.3%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와 정액급여의 증가가 컸던 영향으로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평균대비 5.1% 상승한 3,547천 원임.
 -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평균대비 5.5% 상승한 1,423천 원으로 상승폭이 확대됨.

◆ 2018년 11월 협약임금 인상률 4.5%

- 2018년 11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5%로 전년대비 0.8%p 상승함.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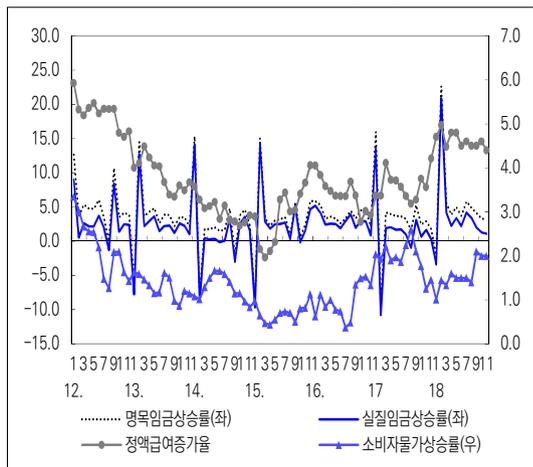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2017		2018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837 (3.4)	2,904 (2.4)	2,991 (3.0)	3,106 (3.8)	3,207 (3.3)	3,170 (3.4)	3,007 (2.9)	3,336 (5.3)	3,103 (3.2)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046 (3.3)	3,117 (2.3)	3,204 (2.8)	3,331 (4.0)	3,418 (2.6)	3,377 (2.8)	3,196 (2.1)	3,293 (3.0)
	정액급여	2,433 (3.8)	2,506 (3.0)	2,580 (3.0)	2,668 (3.4)	2,764 (3.6)	2,750 (3.5)	2,756 (3.6)	2,877 (4.6)
	초과급여	154 (1.3)	170 (10.5)	181 (6.2)	189 (4.2)	190 (0.6)	190 (0.9)	191 (-0.7)	196 (3.4)
	특별급여	458 (1.3)	440 (-4.0)	443 (0.6)	475 (7.2)	464 (-2.2)	437 (-1.0)	249 (-9.6)	474 (8.4)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47 (3.3)	1,253 (0.5)	1,281 (2.2)	1,288 (0.6)	1,353 (5.1)	1,349 (5.0)	1,391 (6.9)	1,423 (5.5)	1,460 (4.9)
소비자물가지수	98.3 (1.3)	99.1 (1.3)	100.2 (0.7)	101.6 (1.0)	103.0 (1.9)	102.6 (2.0)	102.6 (1.2)	104.7 (1.5)	104.7 (2.0)
실질임금증가율	2.1	1.1	2.3	2.8	1.3	1.4	(1.7)	3.7	(1.1)

-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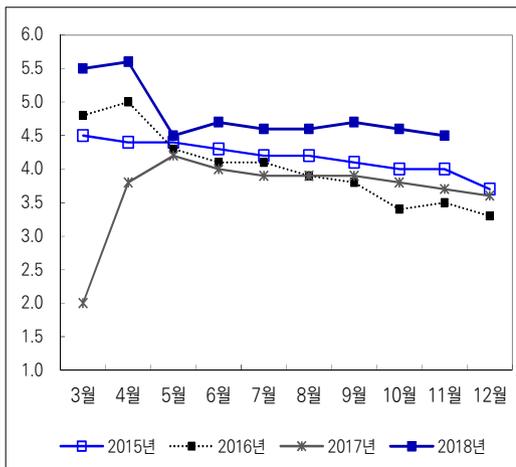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5=100.0)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8년 11월 대규모 사업체 전년동월대비 임금 감소

- 2018년 11월 중소기업 사업체 임금은 4.4% 상승한 가운데 대규모 사업체는 2.0% 감소함.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300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은 특별급여의 감소폭 확대로 전년동월 대비 2.1% 감소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총액이 감소한 것은 전년동월에 일부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에서 특별성 과급 지급시기가 변경되거나 통상임금 관련 소급분이 일시적으로 지급된 데 기인함.

◆ 2018년 1~11월 평균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큰 폭 증가

- 2018년 1~11월 평균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4.7%, 6.0% 상승함.
 - 대규모 사업체 상용직의 정액급여(3.9%↑)와 특별급여(13.7%↑)의 증가에 힘입어 임금상승폭이 확대됨.

〈표 2〉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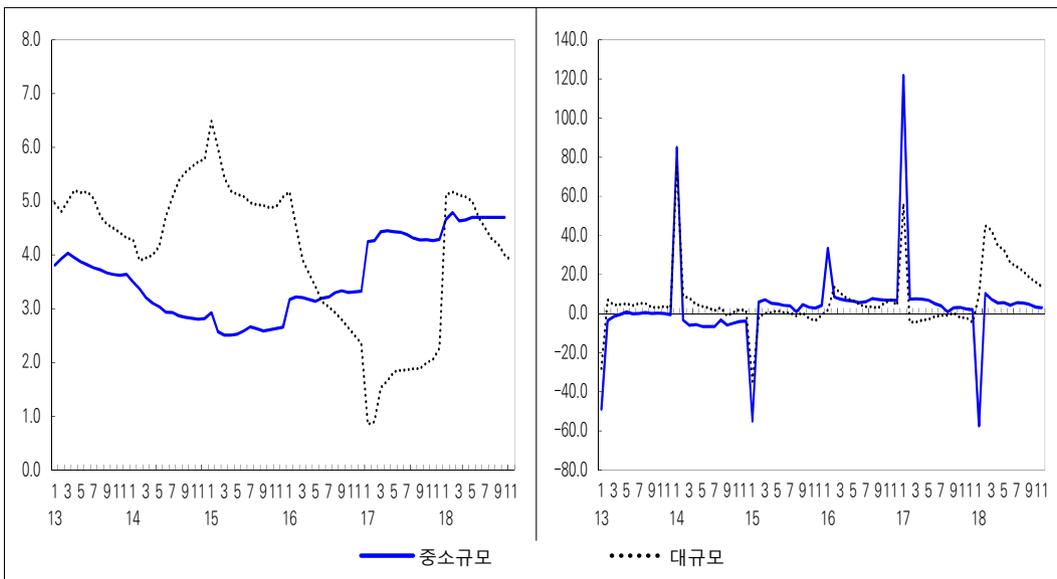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7		2018	
					1~11월	11월	1~11월	11월
중소 규모	소 계	2,661 (3.2)	2,759 (3.7)	2,886 (4.6)	2,854 (4.7)	2,746 (3.7)	2,989 (4.7)	2,867 (4.4)
	상용임금총액	2,661 (3.2)	2,759 (3.7)	2,886 (4.6)	3,046(11.7)	2,920 (2.9)	3,184 (4.5)	3,046 (4.3)
	정액급여	2,414 (2.7)	2,495 (3.3)	2,602 (4.3)	2,590 (4.3)	2,597 (4.1)	2,712 (4.7)	2,718 (4.7)
	초과급여	148 (5.2)	160 (7.5)	164 (2.5)	164 (2.7)	164 (0.2)	171 (4.5)	172 (4.9)
	특별급여	291 (4.1)	310 (6.7)	316 (2.0)	292 (2.4)	159(-11.6)	301 (3.0)	157 (-1.6)
	비상용임금총액	1,277 (2.4)	1,286 (0.7)	1,350 (5.0)	1,345 (4.8)	1,399 (7.1)	1,417 (5.3)	1,468 (4.9)
대규 모	소 계	4,849 (3.7)	4,959 (2.3)	4,983 (0.5)	4,918 (1.0)	4,452 (1.5)	5,214 (6.0)	4,365 (-2.0)
	상용임금총액	5,017 (3.9)	5,131 (2.3)	5,145 (0.3)	5,076 (0.8)	4,618 (1.4)	5,376 (5.9)	4,521 (-2.1)
	정액급여	3,438 (5.1)	3,519 (2.3)	3,598 (2.3)	3,568 (2.1)	3,576 (2.8)	3,708 (3.9)	3,676 (2.8)
	초과급여	349(10.4)	331(-5.2)	324(-2.1)	325(-1.5)	331 (-0.7)	324(-0.4)	327 (-1.3)
	특별급여	1,230(-0.7)	1,281 (4.2)	1,223(-4.5)	1,183(-2.2)	711 (-4.3)	1,345(13.7)	519(-27.0)
	비상용임금총액	1,329(-1.8)	1,311(-1.4)	1,400 (6.9)	1,403 (7.0)	1,295 (3.5)	1,510 (7.6)	1,365 (5.4)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급여증가율(좌, 누계)과 특별급여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 또한 중소기업(5.3%)·대규모 사업체(7.6%) 모두 전년동평균 대비 상승폭이 확대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총액이 증가한 것은 기타운송장비제조업(2016~2017년) 및 자동차관련산업(2017~2018년)의 임금협상타결금 지급(2018년 1분기, 7~8월)과 반도체, 석유, 화학, 항공운송, 금융보험업 등의 경영성과급 지급(3월) 등으로 특별급여가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함.

◆ 2018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8년 11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7.9%)이었으며, 다음으로 숙박음식점업(7.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7.1%) 순으로 평균상승률을 크게 상회함.
 - 반면 교육서비스업(0.6%), 제조업(1.1%)은 1% 내외 수준의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보임.
 - 11월 임금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377천 원)이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은 높은 임금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1,741천 원).

◆ 2018년 1~11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모든 산업에서 증가,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8.2% 상승

- 2018년 1~11월 평균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8.2%)이었으며, 다음으로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6.8%), 여가관련서비스업(6.8%), 운수업(6.6%), 금융 및 보험업(6.4%), 부동산업(6.4%), 제조업(6.1%)이 높은 임금상승률을 기록함.
 - 반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2.2%)과 교육서비스업(2.6%)은 평균임금상승률을 하회하는 2%대의 낮은 임금상승률을 보임.
 - 1~11월 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저조한 임금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6,137천 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55천 원)이었음.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천 원, %)

	2016	2017	2017		2018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 산업	3,106 (3.8)	3,207 (3.3)	3,170 (3.4)	3,007 (2.9)	3,336 (5.3)	3,103 (3.2)
광업	3,678 (2.7)	3,713 (1.0)	3,705 (1.3)	3,687 (-0.4)	3,829 (3.3)	3,812 (3.4)
제조업	3,603 (4.1)	3,690 (2.4)	3,641 (2.9)	3,408 (2.9)	3,863 (6.1)	3,444 (1.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6,300 (8.2)	6,281 (-0.3)	6,004 (-0.3)	4,847 (0.7)	6,137 (2.2)	5,189 (7.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978 (5.3)	3,089 (3.7)	3,050 (4.0)	2,980 (4.2)	3,221 (5.6)	3,122 (4.8)
건설업	2,507 (3.1)	2,624 (4.7)	2,607 (4.6)	2,581 (5.4)	2,765 (6.0)	2,727 (5.6)
도매 및 소매업	2,880 (3.9)	3,049 (5.8)	3,004 (5.8)	2,848 (2.8)	3,177 (5.8)	3,015 (5.9)
운수업	3,023 (4.9)	3,156 (4.4)	3,110 (4.1)	2,894 (4.6)	3,315 (6.6)	3,006 (3.9)
숙박 및 음식점업	1,570 (1.5)	1,626 (3.6)	1,622 (3.5)	1,624 (3.3)	1,755 (8.2)	1,741 (7.2)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978 (3.3)	4,122 (3.6)	4,087 (3.4)	4,013 (3.1)	4,259 (4.2)	4,144 (3.3)
금융 및 보험업	5,499 (4.0)	5,706 (3.8)	5,574 (3.2)	5,149 (2.2)	5,933 (6.4)	5,377 (4.4)
부동산 및 임대업	2,383 (5.7)	2,446 (2.7)	2,427 (2.7)	2,368 (2.4)	2,582 (6.4)	2,494 (5.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44 (5.8)	4,492 (1.1)	4,430 (1.8)	4,116 (-0.8)	4,669 (5.4)	4,289 (4.2)
사업서비스업	2,049 (4.0)	2,088 (1.9)	2,075 (1.9)	2,026 (1.0)	2,191 (5.6)	2,128 (5.0)
교육서비스업	3,231 (1.1)	3,316 (2.6)	3,317 (2.3)	3,079 (2.7)	3,402 (2.6)	3,096 (0.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75 (3.4)	2,671 (3.7)	2,655 (3.9)	2,610 (5.3)	2,784 (4.9)	2,742 (5.1)
여가관련 서비스업	2,353 (5.2)	2,512 (6.8)	2,469 (6.5)	2,406 (8.3)	2,637 (6.8)	2,595 (7.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67 (5.4)	2,240 (3.4)	2,220 (3.6)	2,122 (1.1)	2,371 (6.8)	2,254 (6.2)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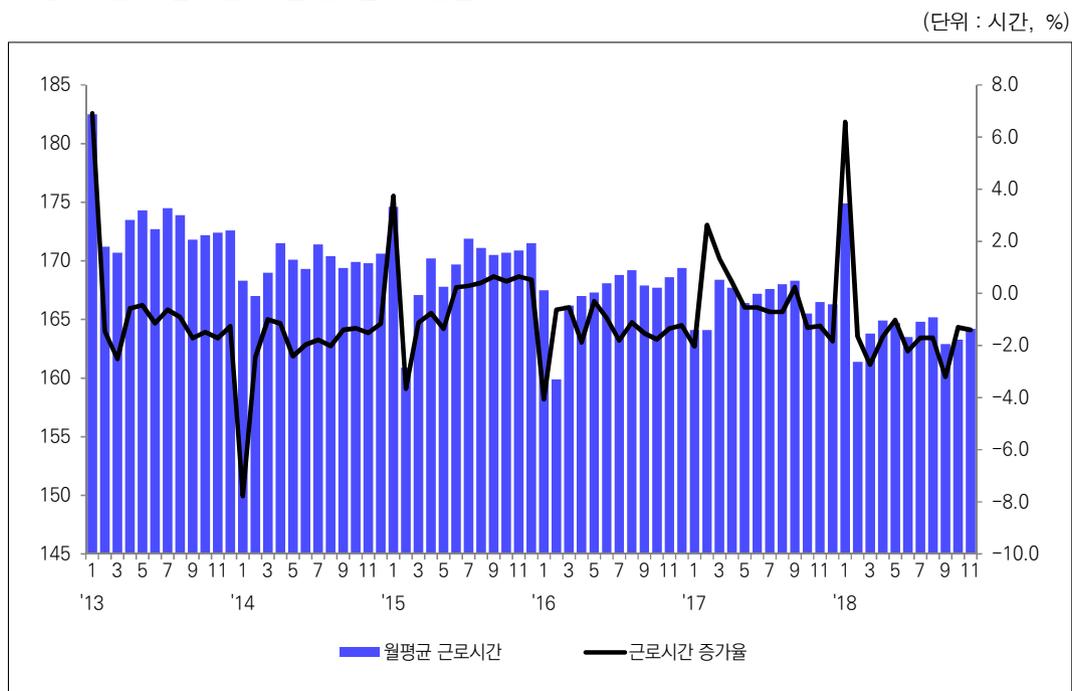
◆ 2018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3.3시간으로 전년동월 대비 2.8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0.2일 감소)

- 2018년 1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8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6시간 감소한 181.8시간이었고, 비상용(임시·일용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5.1시간 감소한 99.5시간임.
 - 임시·일용직의 근로시간은 2017년 9월과 2018년 10월을 제외하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임.

◆ 2018년 1~11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64.2시간으로 전년동기대비 2.3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 0.2일 감소)

- 근로시간의 감소는 근로일수(20.0일)가 전년동기대비 0.2일 감소한 데 기인함.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누계평균) 추이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8년 11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근로일수 감소 영향으로 근로시간 감소

- 2018년 11월 중소기업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73.3시간(-1.7%), 대규모 사업체는 173.3시간(-1.1%)으로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함.
 -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0.8시간 감소한 11.4시간이었으며, 제조업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은 19.5시간으로 1.9시간 감소함. 제조업 내 중분류 중 초과근로시간 상위 5개 산업(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2017년 11월에 비해 모두 감소함.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일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반면, 초과근로시간은 경기상황 등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
- 2018년 1~11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의 감소(0.2일 감소) 영향 등으로 중소기업 사업체는 164.3시간(-1.5%), 대규모 사업체는 163.6시간(-0.7%)으로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함.

〈표 4〉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6	2017	2017		2018	
				1~11월	11월	1~11월	11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9.8 (-1.2)	166.6 (-1.9)	166.8 (-1.4)	176.3(-1.0)	164.3(-1.5)	173.3(-1.7)
	상용 총근로시간	178.4 (-0.7)	174.4 (-2.2)	174.6 (-1.6)	185.3(-1.5)	172.3(-1.3)	182.6(-1.5)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8.3 (-0.9)	164.7 (-2.1)	164.9 (-1.5)	175.7(-1.2)	163.2(-1.0)	173.5(-1.3)
	상용 초과근로시간	10.1 (2.0)	9.7 (-4.0)	9.7 (-4.0)	9.6(-6.8)	9.1(-6.2)	9.0(-6.3)
	비상용근로시간	108.6 (-5.9)	105.7 (-2.7)	105.8 (-2.6)	106.3(-0.6)	99.5(-6.0)	100.7(-5.3)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6.9 (-1.6)	164.4 (-1.5)	164.7 (-1.0)	175.2(-0.2)	163.6(-0.7)	173.3(-1.1)
	상용 총근로시간	170.8 (-1.7)	167.7 (-1.8)	168.0 (-1.2)	180.0(-0.5)	166.9(-0.7)	177.9(-1.2)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7.0 (-0.8)	155.4 (-1.0)	155.6 (-0.4)	167.7 (0.1)	155.2(-0.3)	166.5(-0.7)
	상용 초과근로시간	13.7(-11.0)	12.3(-10.2)	12.4(-10.1)	12.2(-9.0)	11.7(-5.6)	11.4(-6.6)
	비상용근로시간	85.5 (-1.6)	90.3 (5.6)	91.5 (6.0)	83.2 (7.9)	90.0(-1.6)	84.8 (1.9)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8년 11월 광업, 출판·영상, 전문·과학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월평균 근로시간 감소

- 2018년 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3.9%)에서 가장 많이 감소함.
 - 2018년 11월 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188.3시간)이었으며, 다음으로 광업(187.7시간), 하수·폐기물처리(186.2시간), 부동산 및 임대업(185.9시간) 순으로 길었으며,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5.8시간)이었음.
- 2018년 1~11월 평균 근로시간은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함.
 - 광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 금융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전년동평균대비 근로시간이 증가했으며, 이외 산업에서는 근로시간이 감소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16	2017	2017		2018	
			1~11월	11월	1~11월	11월
전 산업	169.4(-1.2)	166.3(-1.8)	166.5(-1.2)	176.1(-0.8)	164.2(-1.4)	173.3(-1.6)
광업	177.9(-1.0)	175.8(-1.2)	175.6(-0.7)	183.7(-0.9)	176.6(0.6)	187.7(2.2)
제조업	183.1(-1.0)	179.8(-1.8)	180.1(-1.2)	191.8(-1.3)	177.4(-1.5)	188.3(-1.8)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67.7(-1.9)	164.9(-1.7)	164.8(-1.3)	181.4(2.4)	162.1(-1.6)	176.8(-2.5)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1(-0.5)	177.1(0.0)	177.1(0.5)	186.7(0.5)	177.9(0.5)	186.2(-0.3)
건설업	142.0(-1.3)	141.9(-0.1)	142.1(0.4)	147.1(1.1)	138.7(-2.4)	145.8(-0.9)
도매 및 소매업	170.2(-1.9)	167.6(-1.5)	167.8(-1.0)	177.6(0.2)	165.4(-1.4)	175.2(-1.4)
운수업	172.9(-0.9)	169.2(-2.1)	169.3(-1.7)	176.4(-1.2)	166.8(-1.5)	173.6(-1.6)
숙박 및 음식점업	165.7(-3.9)	160.4(-3.2)	160.5(-2.9)	165.9(-2.0)	159.7(-0.5)	164.3(-1.0)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2.8(-0.7)	160.9(-1.2)	161.2(-0.5)	173.6(0.3)	162.0(0.5)	174.6(0.6)
금융 및 보험업	162.9(-0.9)	160.5(-1.5)	160.9(-0.7)	172.0(-1.0)	161.3(0.2)	171.5(-0.3)
부동산 및 임대업	189.0(-1.3)	184.9(-2.2)	185.0(-1.7)	193.4(-1.0)	179.1(-3.2)	185.9(-3.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2.9(-1.2)	160.1(-1.7)	160.5(-1.0)	173.1(-0.7)	160.8(0.2)	173.7(0.3)
사업서비스업	170.2(-0.6)	165.1(-3.0)	165.2(-2.4)	175.1(-2.6)	163.4(-1.1)	171.5(-2.1)
교육서비스업	147.5(-2.1)	144.4(-2.1)	144.8(-1.5)	152.6(-0.9)	142.8(-1.4)	150.1(-1.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8.2(-1.5)	164.5(-2.2)	164.8(-1.6)	174.9(-0.9)	162.7(-1.3)	172.0(-1.7)
여가관련 서비스업	160.2(0.2)	159.5(-0.4)	159.5(-0.1)	168.5(1.1)	157.9(-1.0)	165.0(-2.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7.6(-0.5)	164.2(-2.0)	164.2(-1.6)	171.8(-1.8)	162.1(-1.3)	169.5(-1.3)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8년 1~11월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3.2%)이었으나 여전히 가장 긴 근로시간(179.1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8.7시간)으로 나타남.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19년 1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104건
 - 2019년 1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건수(88건)보다 16건 많은 수치임.
- 2019년 1월 조정성립률 58%
 - 2019년 1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52.9%에 비해 5.1%p 낮아진 수치임.

〈표 1〉 2018년, 2019년 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9. 1	104	80	40	13	27	29	3	26	2	9	24	58
2018. 1	88	58	27	10	17	24	2	22	4	3	30	52.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19년 1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3,152건
 - 2019년 1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2,872건)보다 280건 높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12.7%(148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7.3%(1,014건)를 차지함.

〈표 2〉 2018년, 2019년 1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9. 1	3,152	1,162	131	17	196	80	446	292	1,990
2018. 1	2,872	1,118	118	29	182	94	386	309	1,753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19년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69건
 - 2019년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월(85건)보다 16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41.3%(19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58.7%(27건)를 차지함.

〈표 3〉 2018년, 2019년 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9. 1	69	46	18	1	4	1	22	0	23
2018. 1	85	38	18	2	8	3	7	0	47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 사실상 불참

- 집행부가 발의한 ‘경사노위 참여안’을 제외한 ‘불참’, ‘조건부 참여’ 등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
 - 민주노총은 1월 28일 KBS 아레나홀에서 제6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대한 4개 안을 표결에 부쳤음.
 -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원안에 대해 일부 대의원들은 ‘무조건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3가지 수정안을 냈음.
 - 민주노총은 집행부 안을 제외한 원안에서 거리가 먼 수정안부터 찬반 토론과 표결을 진행하였음. 먼저 김현옥 대의원 등 138명이 낸 무조건 불참안이 재석 958명 가운데 331명이 찬성해 부결됐고, 금속노조가 제안한 조건부 불참안도 재석 936명 가운데 찬성 362표를 얻는 데 그쳤음. 그리고 일단 참여하되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주요 안건을 국회가 강행 처리할 시 경사노위에서 탈퇴하는 조건부 참여안도 재석 911명 가운데 402표로 부결되었음.
 - 당시 집행부 ‘경사노위 참여안’이 표결에 없었고, 원안을 제외한 3가지 안이 모두 부결됨에 따라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중앙위원회에 위임됨.

◆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 1월 31일 체결

- 7,000억 규모, 주 44시간 평균 초임연봉 3,500만 원
 -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신설법인 투자에 합의하고 1월 31일 투자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가 체결됨.

- 광주광역시 2018년 12월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 관련 마지막 쟁점 사항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약이 무산된 이후, 2019년 1월 31일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음.
- 노사민정협약이 결의한 상생발전협정서에는 △적정임금 수준 유지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 △적정노동시간 구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 간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노사 간 협력을 통한 소통·투명 경영 실현 △지역공동 협조체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음.
- 2018년 당시 쟁점이었던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을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 대수 35만 대 달성 때까지로 한다’는 조항은 유지하기로 하였고, 대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상생협의회의 합리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음.
- 또 가시적 경영성과 창출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도래 이전이라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부속 결의를 협정서에 추가했음.

〈표 4〉 광주형일자리 추진 일지

광주형 일자리 추진 일지	
2014년 6월	윤장현 전 광주시장,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 내걸고 취임
9월	전담 조직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신설
2015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포함
2018년 6월	현대차, 광주시에 투자의향서 제출
9월	한국노총 불참 선언
10월	한국노총 재참여 3차례 원탁회의
11월 1일	노동계 입장 반영한 협상안 마련
11월 2일	광주시·노동계·전문가 참여한 투자유치추진단 출범
11월 12일	이용섭 시장, 현대차 정진행 사장 면담
11월 13일	투자유치추진단, 노동계와 4가지 원칙 합의
11월 27일	노동계, 시에 협상 전권 위임
12월 4일	현대차와 투자 합의
12월 5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합의안 수정 의결, 현대차 수용 거부로 무산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반대’ 현대·기아차 노조 부분파업
12월 9일	이용섭 시장 “협상팀 재정비 … 협상 직접 나서” 선언
2019년 1월 14일	광주시, 노사 상생 도시 선언
1월 16일	박병규 광주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 취임 … 재협상 본격화
1월 29일	광주시·현대차 합의안 마련
1월 30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합의안 의결
1월 31일	광주시·현대차 투자 협약식

자료 : 연합뉴스, 2019. 1. 31.자.

- 신설법인의 전체 근로자의 평균 초임연봉은 주 44시간(연장근로 4시간 포함) 기준으로 3,500만 원임.
- 양측이 합의한 투자 협약은 신설법인 자본금 2,800억 원 등 총 7,000억 원 규모로 설립되며, 광주시는 자본금의 21%인 590억 원을 출자해 최대주주가 됨. 현대차는 19%인 530억 원을 출자하고 지분 투자로만 참여함.
- 신설법인의 완성차 위탁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약 62만 8,099m² 부지에 10만 대 규모로 건설되며, 오는 2021년 하반기에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 현대차는 1,000cc 미만의 경차급 SUV를 신규 개발해 신설법인의 생산공장에 생산을 위탁하고 완성차를 공급받게 됨.
- 광주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조금과 세제감면 혜택을 지원함.

◆ 사무금융노조, 흥국화재지부 설립

- 1월 19일 설립총회 열어 ... 흥국화재 복수노조 체제로
 - 1월 19일 사무금융노조 흥국화재지부(지부장 김진만)가 설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하였고, 지부는 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에 편제, 흥국화재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됨.
 - 지부는 △고용안정 △정당한 노동 대가 구현 △동종업계에 부끄럽지 않은 복지제도 달성을 당면과제로 제시함.
 - 김진만 지부장은 “기존 노조가 조합원 범위를 과장급으로 제한해 전체 직원들을 대변하지 못한 데다, 고용·임금·복지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실망했다”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듣겠다”고 밝힘.

◆ 밴(VAN) 서비스 제공사 노동자 협의회 구성

- 사무금융연맹 산하 5개 노조참여 ... 수수료 인하로 수익감소, 카드사 노조와 연대 추진
 - 1월 30일 사무금융연맹은 최근 산하 5개 노조(NICE정보통신노조·KIS정보통신노조·KSNET노조·스마트로노조·한국스마트카드노조)로 구성된 ‘밴 노조협의회’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 국내 13개 밴 회사 중 노조가 있는 곳은 5개이며, 활동목표는 △밴 지불결제 시장에서 공동이익 실현 △밴 사업장 노조결성 지원 △밴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임.
 - 배영석 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 밴 서비스 제공사에도 파장을 미쳐 NICE정보통신의 경우 지난해에만 영업이익이 20~30% 감소했다”며 “급여 미지급

등 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카드사 노조와 연대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힘.

◆ 공무원 노사 10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식

○ 노정 동수로 ‘공무원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 정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한국공무원노조가 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08 본교섭 협약체결식’을 열었음.
- 정부와 공무원 노조들은 2006년 첫 단체교섭을 시작해 이듬해 12월 ‘2006 정부교섭’을 타결했음. 공무원노조와 공노총·한국공무원노조 등은 2008년 공동교섭단을 꾸려 두 번째 대정부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옛 민주공무원노조·법원노조의 법적지위를 문제 삼아 교섭을 거부했음.
- 2009년 10월 예비교섭 후 10년 가까이 교섭이 중단된 후인 2018년 7월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중단된 2008년 교섭을 재개함. 이번 교섭에는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민권익위원회가 교섭에 참여함.

〈표 5〉 2008 본교섭 협약 사항 및 주요내용

장	사항	주요내용
2	조합활동 및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정부는 조합 및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절을 포함한 휴식권을 보장,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 정부와 조합은 조합원의 근무 조건 및 복리 증진에 관한 상황과 본 협약의 이행에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공무원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함.
3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정부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장·단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장기 근속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 제도 개선에 대해 차기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함. - 정부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정년퇴직 후의 소득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과 협의하기로 함. - 정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보수 현실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공무원 처우 개선과 보수제도의 근본적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정 동수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함.
4	연금·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근본적 개정을 하는 경우, 구성원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연금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기구 구성 시 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함. - 정부는 공무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적절한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정부는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자기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점수 상향 등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표 5〉의 계속

장	사항	주요내용
5	안전 보건 및 재해 보상에 관한 사항	- 정부는 공무원의 건강검진에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공무 상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하여는 생계 지원을 위한 소득보장을 하기로 함. - 정부는 공무원 순직 시 재직기간 20년 미만자에 대한 보상 및 유족 보호를 강화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 위험직무순직인정 공무원의 요건에 직무 수행 중 제3자로부터 위협을 받아 순직한 공무원을 포함하기로 함.
6	모성 보호 및 성평등에 관한 사항	-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단축시간을 경력평정 기간으로 인정하며, 신청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기로 함. -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전담기구는 조합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도록 함.
7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 정부는 대학에서 성별·연령·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대학 소속 공무원의 근무 조건과 관계되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조합과 교육부장관의 협의회를 연 1회 개최하기로 함.
8	기타 제도 개선 사항	- 정부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 대행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로 함. - 정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않음. - 정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재산등록 요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함.

◆ 넥슨 자회사 네오플, 8월부터 포괄임금제 완전 폐지

○ 게임업계 최초 노사 단체협약 잠정합의

- 1월 23일 화학섬유식품노조와 넥슨지회에 따르면 최근 넥슨 계열사인 네오플 노사가 포괄임금제 폐지와 조직해체 이후 전환배치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에 잠정합의 하었다고 밝힘.
- 네오플은 넥슨그룹의 계열사로서 노동조합소속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분회 소속이고, 2018년 9월 4일 기준 170명의 조합원이 있음.
- 노사는 △포괄임금제 폐지 △조직해체 등으로 인한 전환배치 방안 마련 △유연근무제도 개선 △복리후생 및 모성보호 확대 △노조활동 보장 등 90여 개 조항에 합의함.
- 이번 합의로 네오플은 연봉삭감 없이 8월부터 기존 포괄임금에 포함됐던 연장·야간·휴일근무에 대한 고정연장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하였음.
- 또한 노사는 조직이 해체됐을 때 2개월 안에 노조와 협의를 거쳐 전환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하였음.

- 임영국 사무처장은 “게임업체 최초 단체협약일 뿐 아니라 지난해 노조설립 바람이 거셴 IT업계 신생노조 중 첫 단체협약체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 KB국민은행지부, 찬반투표 거쳐 임단협 마무리

○ 조합원 93.41% 찬성 ... 박홍배 위원장, “노사관계 회복 위해 노력”

- 지부가 1월 25일 진행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90% 이상의 찬성률로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가결됨. 재적조합원 1만 3,829명 중 1만 1,921명(86.2%)이 투표에 나섰고, 이 중 1만 1,136명(93.41%)이 찬성표를 던졌음.
- KB국민은행지부는 1월 8일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이후 19년 만에 파업을 한 것임. 노사는 1월 21일 잠정합의서를 교환하고, 23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접점을 찾았음.
- 노사는 일반직은 임금 2.6%를 인상하고 저임금 직군은 5.2%를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음. 성과급은 300%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도달 시기는 부점장급과 팀장·팀원 모두 만 56세 생일 다음 달 1일 진입하는 것으로 늦췄음.
- 최대 쟁점이었던페이밴드(호봉상한제)와 LO직군 경력인정 문제는 양측이 ‘인사제도 TFT’를 꾸려 향후 5년 이내에 논의하기로 하였고, 노사가 임금개편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페이밴드 제도는 완화하기로 하였음.
- 노사는 1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조인식을 열었고, 박홍배 위원장은 “노사관계의 회복과 더불어 조직의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마지막으로 노사는 임금단체협약 쟁점을 해결할 TFT를 구성, 2월 중으로 상생협력안을 발표할 예정임.

◆ 전주 노동자 고공농성 510일 만에 마무리

○ 김재주 지회장 ‘20m 망루 농성’ 해제

- 사납금 폐지와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며 500일 넘게 20m 높이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여 온 김재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1월 26일 땅으로 내려왔음.
- 이날 공공운수노조 김영만 택시지부장과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전주시청에서 “전주시가 지역 택시회사들이 전액관리제를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서에 서명하였음.

- 전주시는 협약서에 따라 전액관리제 이행을 약속하지 않은 7개 업체에 3차·4차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고, 3차 처분은 2월 25일에 실시할 예정으로, 과태로 부과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감차 처분에 들어가기로 했음.
- 양측은 전액관리제 도입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 신속히 운영·개시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전주시는 택시 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체 지도·점검을 6개월에 1회 실시하기로 함.

◆ 근로복지공단 2월 1일부터 피시오프제 전면시행

- 근무시간 내에만 컴퓨터 사용 가능 ... 노조 “저녁이 있는 삶 실현”
 - 근로복지공단은 근무시간 시작 30분 전에 컴퓨터가 켜지고 근무시간 종료 30분 후에는 자동으로 꺼지는 피시오프(PC OFF)제도를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 2월 1일부터 공단 직원들은 긴급한 업무가 있을 때 별도로 신청해야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고, 시간외근무는 부서나 팀별·기관별로 총량제를 적용함. 직원 한 사람당 1주일에 3시간의 시간외노동을 부여하고, 직원이 10명인 부서의 경우 초과노동은 1주일에 30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됨. 시간외노동 총량은 기관장·부서장 평가에 반영함.
 - 이남형 노조 사무처장은 “공단 내 업무량 경감이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민원서류 접수 시스템 개선, 전화민원 축소와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실현하겠다”고 밝힘.

◆ 택시업계, 카풀해결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 카풀 문제 우선 논의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지난 1월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고 밝힘.
 - 카카오모빌리티는 1월 15일 택시업계가 요구한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1월 21일 출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논의방안은 △완전 월급제 시행 △최저임금 확보 △감차사업 추진 및 규제완화 △IT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택시산업 모색과 같은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택시산업 발전방안임.

〈표 6〉 카풀관련 주요 사건 일지

카풀관련 주요 사건 일지	
2017년	11월 카풀 업체 플러스, '시간선택제' 도입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시간선택제 불법 여부 조사 요청
2018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업체 렉시 252억 원에 인수 ... 카풀 진출 공식화 7월 국토교통부, 카풀 운전자당 1일 2회 중재안 제안 8월 택시업계 카풀 시간제한 요구로 논의 전면 중단 10월 16일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기사 전용 앱 출시 ... 기사 모집 단행 10월 18일 주요 택시단체들,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개최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출범 11월 14일·20일 택시·카풀 TF, 택시 및 카풀 업계와 간담회 진행 12월 7일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시범 테스트 개시 ... 17일 정식출시 발표 택시단체들, 카카오택시호출 전면 거부 선언 12월 10일 택시기사 최모씨, 카카오 카풀 규탄하며 국회 앞에서 분신 사망 12월 11일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정식 출시 잠정 연기 시사 12월 13일 카카오모빌리티, 카풀 출시 연기 공식 발표 ... 사실상 무기한 연기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업계와 간담회 개최 ... '대타협기구' 구성 제안 주요 택시단체들, 간담회 직후 대타협기구 불참 선언
2019년	1월 8일 카카오모빌리티·플러스, 평화당 주최 토론회 불참 1월 10일 택시기사 임모씨, 서울 광화문에서 분신 사망 1월 15일 카카오모빌리티, 시범 서비스 중단 결정 1월 18일 주요 택시단체들, 대타협기구 참여 결정

자료 : 머니투데이, 2019. 2. 18.자.

◆ 사무금융노조,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금동결”

○ 김현정 위원장, “사회연대 직장에서 시작할 것”

- 사무금융노조는 1월 29일 서울 마포구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정기대의원회의를 열고 “직장을 넘는 사회연대로 10만 산별노조 시대를 열겠다”고 하였음.
- 노조는 이날 사업계획을 확정했고, 올해 임금교섭에서 사용자들에게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7%)을 더한 4.4%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라 밝힘.
- 노조는 산하 조직과 사업장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파견·도급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임금을 동결하자”고 제안할 예정임.
- 노조는 “올해 본격화할 우분투 운동의 연장선에서 임금교섭 방침을 정했다”며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로 산별노조를 확대하자는 뜻도 있다”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노조는 △고용안정 쟁취 △노동시간단축 △노동자 경영참가 △성평등 조직문화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음.
- 비슷한 사례로, 2018년 12월 10일 보건의료 노사는 산별중앙협약 조인식에서 “공동기금 1억 원 조성”으로 노사 공동의 정책과제 연구,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차별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사회공익 실현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함.

◆ 태안발전소에 대한 노동부 특별안전보건감독 1,029건 위반 적발

-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특별산업안전조사위 구성
 - 고용노동부는 1월 16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등 태안발전소와 하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각각 865건과 164건으로 총 1,029건이 적발됨.
 - 이 중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책임자·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고, 관리상 조치미흡 등 29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억 7,000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임.
 -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 실시 등임.
 - 또한 고용노동부는 고 김용균 씨 사고와 관련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전문가와 태안화력 고 김용균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원회 추천자,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기로 함.
 - 위원회에서 태안발전소 사고뿐만 아니라 과거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원인을 규명, 원·하청 실태를 조사한 뒤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노동부, 사고 위험 큰 건설현장 77곳 작업중지명령

- 겨울철 건설현장 집중감독 ... 위험 방치한 346곳 형사입건
 - 고용노동부는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전국 753개 건설현장 안전보건 실태를 기획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은 690곳으로 집중감독 대상 사업장의 91.6%였음.
 - 고용노동부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높은 곳에서 일하게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곳 건설현장에는 작업중지명령을 했고, 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346곳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입건했음.
 -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곳에는 15억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명령함.

◆ 발전 5사 최근 5년간 산재사망 100% 하청노동자

- 임이자 의원, 노동부 산재현황 잘 분석 “안전·보건조치 대폭 강화해야”

- 2월 6일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한국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에서 327건의 산재사고가 일어났음.
- 임의원이 고용노동부 산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발전 5사에서 3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8명을 제외한 326명이 하청노동자였음. 산재사망자 20명 역시 모두 하청노동자였음.
- 임이자 의원은 발전 5사 산재발생 현황과 관련해 “하청업체의 산재발생량이 무려 97.6%를 차지한다”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도급사업 시 원·하청 순회점검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인권위, “업무상재해로 인한 태아 건강손상도 산재 보상해야”

○ 제주의료원 사건 대법원에 의견 제출 “유산·유산증후만큼 태아 건강도 보호 필요”

- 인권위는 1월 29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관련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상재해로 태아 건강이 손상됐다면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힘.
- 인권위에 따르면, 2009~2010년 제주의료원 근무 중에 임신한 간호사들이 태아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약품을 직간접적으로 취급하다 유산했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을 출산했음.
- 선천성 심장질환 아동을 출산한 간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2014년 취소소송을 냈음.
- 인권위는 “임신부는 임신과 출산으로 건강상 많은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태아 건강 손상이 발생하면 진료횟수가 증가하고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는다”며 “태어나 임신부의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함.
- 인권위는 이에 따라 “태아 건강손상을 유산과 다르게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귀책사유 없는 여성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음.

◆ 육아휴직 쓰는 아빠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증가

○ 2018년 1만 7,662명, 전체의 17.8% 차지

- 1월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7,662명으로 1년 전(1만 2,042명)보다 46.7% 늘었고,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 9만 2,999명의 17.8%였음.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는 6,606명(남성 5,737명)으로 전년(4,409명)과 비교해

49.8% 늘어났음.

- 남성 육아휴직자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1년 동안 37.1% 증가했고, 100인~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79.6% 늘어 중소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이용자는 3,820명으로 1년 전 2,821명보다 999명(35.4%) 늘었고 남성(550명)이 14.4%를 차지했음. 이는 전년 남성 이용자(321명)보다 71.3% 상승한 것임.
- 김효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지난해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40%에서 80%로 상향조정 됐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7월부터 모든 자녀 기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오른 영향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이동식 크레인 조종하려면 자격증 따야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조종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하는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 교육과정(20시간)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장비 조종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은 특례에 따라 2019년 말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종 전문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로 하였음.
- 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이동식 크레인 등을 조작하는 작업자로 하여금 장비 특성과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임.

(조규준, 동향분석실 연구원)